

- 서울특별시 주·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-

## 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414
------------	------

2018년 4월 5일  
교 통 위 원 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3월 9일, 서영진 의원 외 9명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2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18년 4월 5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서영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주·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 여성 위주에서 남성으로 바뀜에 따라 단속 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, 또한 제복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공무원별 제복의 종류 구분 및 현재 착용하지 않는 제복 삭제(안 제3조제1항제1호)
- 제복 만드는 방법과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임(안 제3조제2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8. 3. 16 ~ 2018. 3. 23

-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) : 원안동의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중에서 여성의 제복만을 규정하고,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등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 만드는 방법과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- 현행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2조에서는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은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제복의 착용의무, 제복의 종류,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<sup>1)</sup> 따라

현행 조례에서는 단속 담당 공무원 신분<sup>2)</sup>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복장형태를 정하고 제복의 세부사항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각각 [별표 1] 및 [별표 2]에서 정하고 있음

- 다만, 현행 조례 [별표 1]과 [별표2]에서는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중 ‘여성’에 대해서만 근무복, 모자, 신발 등의 제복 관련 규정과 이에 대한 지급관련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고, 제복을 제작하는 사항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실제 현장의 제복 착용

1)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(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) ① (생략)

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,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편 단속공무원의 신분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
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처럼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고, 제복의 세부적인 재질, 제작방법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장 운영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조례의 법적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한편,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제작시 디자인 등의 제작방법, 지급기준 및 현장여건에 대한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주·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주·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·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제복의 종류)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.

1. 근무복 : 하복, 동복, 춘추복(이하 "하복 등"이라 한다), 방한복
2. 모 자 :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

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의 따로 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별표1,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제복의 종류)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 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</p> <p>    가. 근무복 : 하복, 동복, 춘추복(이하 “하동복”이라 한다), 방한복</p> <p>    나. 모자 :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회장</p> <p>    다. 신발(부츠 포함)</p> <p>    라. 부속물 : 넥타이·타이핀 및 허리띠</p> <p>2. 제1호에서 규정된 단속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</p> <p>    가. 모자 :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회장</p> <p>    나. 흉장(개정 2005.09.30)</p> <p>    다. 신발(주차단속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.)</p>	<p>제3조(제복의 종류)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<p>1. 근무복 : 하복, 동복, 춘추복(이하 “하동복”이라 한다), 방한복</p> <p>2. 모자 :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회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<p>2. &lt;삭 제&gt;</p>

② 제1항의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

제6조(지급기준) 제복 등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되,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.

<삭 제>



# 서울특별시 주·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영진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41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3월 9일

발 의 자 : 서영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제리, 이현찬, 이순자, 김경자(양천),  
문영민, 김동욱, 최관술, 이정훈,  
박진형 의원(9명)

## 1. 제안 이유

동 조례는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 여성 위주에서 남성으로 바뀔에 따라 단속 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며, 또한 제복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을 시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 골자

가. 제복의 종류 중 현재 착용하지 않는 제복 제3조 제1항 제1호 다, 라, 마와 제2호 삭제

나. 제3조 제2항의 제복 만드는 방법(별표1)과 제6조 지급기준(별표 2)을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임,

## 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

- 「도로교통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주·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·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제복의 종류)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.

1. 근무복 : 하복, 동복, 춘추복(이하 "하복 등"이라 한다), 방한복
2. 모 자 :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

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별표1,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제복의 종류)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<u>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u></p> <p>1.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 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근무복 : 하복, 동복, 춘추복(이하 “하동복”이라 한다), 방한복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모자 :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신발(부츠 포함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부속물 : 넥타이·타이핀 및 허리띠</p> <p>2. 제1호에서 규정된 단속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모자 :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흉장(개정 2005.09.30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신발(주차단속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.)</p>	<p>제3조(제복의 종류)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<u>다음과 같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<p>1. 근무복 : 하복, 동복, 춘추복(이하 “하동복”이라 한다), 방한복</p> <p>2. 모자 :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<p>2. &lt;삭 제&gt;</p>

② 제1항의 따라 제복을 만드는  
방법은 별표1과 같다

제6조(지급기준) 제복 등의 지급  
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되, 시  
장 또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  
위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  
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 
방법과 지급기준은 서울특별  
시장이 따로 정한다.

<삭 제>